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트러스트로보<u>기은</u> <u>센퇴직연금증권</u>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"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같다.</p> <p>1. <u>C클래스</u>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2. <u>Ce클래스</u> 수익증권 :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트러스트로보<u>자산</u> <u>배분</u>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"으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같다.</p> <p>1. <u>Cp2클래스</u> 수익증권 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</p> <p>2. <u>Cp2-E클래스</u> 수익증권 :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</u>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p> <p>3. <u>A클래스</u> 수익증권 : <u>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u></p> <p>4. <u>Ae클래스</u> 수익증권 : <u>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5. <u>C클래스</u> 수익증권 : <u>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</p> <p>6. <u>Ce클래스</u> 수익증권 : <u>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p> <p>7. <u>S클래스</u> 수익증권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결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</p>
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8. <u>Cp클래스 수익증권</u>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9. <u>Cp-E클래스 수익증권</u> :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p> <p>10. <u>S-P클래스 수익증권</u>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11. <u>I클래스 수익증권</u> :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·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, 집합투자기구,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</p> <p>12. <u>W클래스 수익증권</u>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3조의 2(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)</u> 이 투자신탁의 가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에 한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u>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</p>	<p><u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u>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</p>

<p>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C클래스</u> 수익증권 2. <u>Ce클래스</u> 수익증권 <p><신 설></p>	<p>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Cp2클래스</u> 수익증권 2. <u>Cp2-E클래스</u> 수익증권 3. <u>A클래스</u> 수익증권 4. <u>Ae클래스</u> 수익증권 5. <u>C클래스</u> 수익증권 6. <u>Ce클래스</u> 수익증권 7. <u>S클래스</u> 수익증권 8. <u>Cp클래스</u> 수익증권 9. <u>Cp-E클래스</u> 수익증권 10. <u>S-P클래스</u> 수익증권 11. <u>I클래스</u> 수익증권 12. <u>W클래스</u> 수익증권
<p>제38조(수익자총회)</p> <p>①~⑤ (생략)</p> <p>⑥수익자총회는 <u>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</u>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<u>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	<p>제38조(수익자총회)</p> <p>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수익자총회는 <u>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</u>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<u>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"간주의결권행사"라 한다)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1.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</p>

<p>⑧집합투자업자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<u>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⑨연기수익자총회의 <u>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”으로 하고,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</u></p>	<p><u>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</u></p> <p><u>2.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</u></p> <p><u>3.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</u></p> <p>⑧집합투자업자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<u>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</u>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p>⑨연기수익자총회의 <u>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”은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”으로 보고,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”은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”으로 본다.</u></p>
---	---

<신 설>

0.15

6. Ce클래스 수익증권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50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10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<신 설>

7. S클래스 수익증권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50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00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<신 설>

8. Cp클래스 수익증권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50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0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<신 설>

9. Cp-E클래스 수익증권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50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50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<신 설>

10. S-P클래스 수익증권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50

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80

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

	<p><u>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u></p> <p><u>1. S클래스 수익증권 : 3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.15 이내</u></p> <p><u>⑤ 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 (<u>Cp클래스, Cp-E클래스, S-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</u>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<신 설></p>	<p>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